

「2026년 창업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」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(이하 창투원)에서는 공공분야에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 및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4월 13일
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
- 모집기간 : 2026. 4. 13.(월) ~ 4. 30.(목), 18:00까지
- 사업목적 : 부산지역 기술력이 우수한 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초기판로 개척 지원 및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
-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(본점 기준) 업력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
-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
- 지원내용 : 창업기업 시제품 사용 희망 공공기관 발굴 및 매칭
- 지원기업 선정 : 서류.대면 2단계 절차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

2 지원세부내용

-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
-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(부가세 포함), 제품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)

○ 지원내용

-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시제품 비용 지원

※ 시제품 비용 외 설치비, 지원금 초과 금액 등은 창업기업 자부담

- 판로개척을 위한 실증 완료 확인서 발급

○ 대상품목 : 공공분야 테스트베드 실증이 필요한 시제품을 보유한 업체

○ 수요기관 : 테스트베드에 적정한 공공기관*

※ 수요기관 발굴(6월 중) 기간 내 공공기관 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업은 최종 지원 불가

*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한함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

- 공기업(공사 및 공단 등),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

-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

▷ 1순위 부산시 공공기관, 2순위 그 외 지역 공공기관

3 신청자격

○ 신청자격

① 부산시 소재(본사 기준) 업력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

②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시제품*을 보유한 기업

* 시제품: 개발 중인 기기, 서비스, 시스템 등 성능 검증을 위해 상품화 이전 제작하는 제품

③ ‘신청 제외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

<신청자격 세부조건>

▷ 신청자격 상세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2호제2의2호 및 제2조 제3호제3의2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중

▷ 신청가능 업력 : 2019년 4월 13일 ~ 2026년 4월 12일

▷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기준

▷ 법인사업자 : 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기준

· 개인,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▷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

·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※ 위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

○ 신청제외 대상
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- 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63411
2	무도유흥주점업	634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- ④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중인 자 또는 기업
- ⑤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
- ⑥ 창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- ⑦ 본 사업(공공기관 테스트베드(공공판로 지원사업)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

4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6. 4. 13(월) ~ 4. 30(목),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부산창업포털(<https://busanstartup.kr>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- ※ 부산창업포털(<https://busanstartup.kr>)접속 →【회원가입】→【사업공고】→【접수중인 사업】→【2026년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】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
- ※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(18:00 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
- ※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

○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(엑셀포함) ②제품 및 서비스 상세 설명서 ③ 실증 수행계획서
- ④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 ⑤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원
- ⑥ 기타서약서 및 동의서 ⑦ 기타 증빙서류

* 기타성과 증빙

- ◆ 매출증빙 :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(2023~2025년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2025년도 12월 기준)
- ◆ 고용증빙 : 4대보험 가입자 명부(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,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)
- ◆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: 아이템 관련 출원, 등록서류, 기타 인증서류 등

5

평가 및 선정

○ 평가방법 :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① (요건검토) 신청요건* 및 제출서류(누락여부 등) 검토

② (서면평가) 기술성, 사업성, 시장성, 실증가능성, 권리성, 기대효과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

③ (대면평가) 사업계획 발표,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→ 최종선정

*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

○ 평가절차 및 일정(안) * 상기 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구분	① 요건검토	② 서면평가	③ 대면평가
내용	자격 기준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평가 (1.5배수 내외 선정)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10분 이내)
일정	'26. 5월	'26. 5월	'26. 5월

* 상기 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○ 평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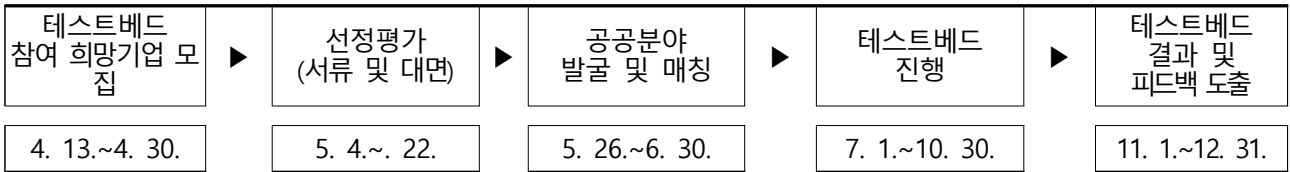
【 평가항목 및 배점(안) 】

구분	항목(배점)	세부내용
1	기술력 (20)	· 기술의 우수성, 혁신성, 독창성(차별성) 정도 · 기술구현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 · 기술의 대체가능성, 기술개발 정도 ·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
2	시장성 (20)	· 해당제품 공공시장의 진입(납품) 가능성 · 대상시장의 경쟁성, 집중도, 점유율 · 시장의 성장성, 수요성, 시장에서의 확산가능성
3	사업성 (20)	· 향후 사업화(인력, 생산설비 등) 기반 보유 여부 ·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확보 및 파생적 매출 가능성
4	실증가능성 (20)	· 해당 공공기관에서의 '테스트베드 실증' 실행 적합성 · 납품할 공공기관 특성에 부합, 테스트베드 실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
5	권리성 (10)	· 권리의 안정적 유지 가능성 · 기술 모방의 불용이성 · 기술의 경제적 수명, 제품 적용성
6	기대효과 (10)	· 서비스 도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및 확산가능성 · 실증지원 후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가능성

○ 선정안내 : 개별 안내 *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

6

사업 추진 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7

유의사항

- 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 -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
 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 -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,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요건검토 및 평가에 참여가능
 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창투원과 사전 협의하여 창업기업 임·직원이 대리 발표 할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, 선정취소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가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금과 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되게 사용 또는 집행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,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창투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,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되게 지원금 사용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

8

문의처

- (재)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혁신창업실
- 연락처 : 051-715-1744 / cho@bsia.or.kr